

(별지 제1호 서식)

감사보고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새빛학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괄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새빛학원(안산대학교)의 2020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학교법인 새빛학원(안산대학교)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 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 지적사항 없음(표기)>
	건수	금 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지적사항 없음
2. 법인 수익사업 관련				"
3. 학교 관련				"
계				

붙임 : 1. 사학기괄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2021년 4월 13일

학교법인 새빛학원
감사 이승현 *이승현*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2311 호)
감사 최기호 *최기호*

※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

피감사 기관장

2021년 4월 13일

학교법인 새빛학원

이사장 오성계 (인)



피감사 기관장

2021년 4월 13일

안산 대학교

총장 안규철 (인)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새빛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새빛학원 (안산대학교, 인천기독병원)의 2020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새빛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새빛학원의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3일

학교법인 새빛학원

감사 이승현 

감사 최기호 

피감사자 (입회인)

직명 법인사무국장

성명 문용국 